

# 연안항의 해상교량안전진단 진단시기에 관한 고찰

정재용\*

\* 목포해양대학교 해사대학 국제해사수송과학부



### 장흥군 노력항 해상교통안전진단

번호	안전취약요소	조치사항	사원자 의견	시행주체
1	3,000DWT급 선박 기준에 따른 부두 견인 수역 준설	DL(-)0.5m까지 준설완료	DL(-)0.5m까지 준설하도록 하겠음	장흥군 전략담당
2	500미터 이상의 예안선 확보	쓰러스타를 경각하지 않은 선박의 정박을 위한 500미터 이상의 예안선 확보 필요	예안선 및 항내 정박지 확보 하겠음	장흥군 전략담당
3	대상선박 및 부두 설계 변경 시 안전진단 재수행	대상선박 및 부두 설계 변경 시 안전진단 재수행 필요	재수행하겠음	장흥군 전략담당
4	항이랑에 대한 항주와 정함 검토	무인선박에 따른 항주와 정함 검토 필요	3,000DWT급 선박은 오항 하였던 오항시설보다 항주 파가 작아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, 실시설계 단계에서 필요 시 무인선박에 따른 항주와 정함을 검토하겠음	장흥군 전략담당
5	공사 중 안전대책	공사 중 안전대책 준수	안전대책을 준수하며 주변 어촌계에 충분한 홍보를 하여 항행안전성을 확보하겠음	장흥군 전략담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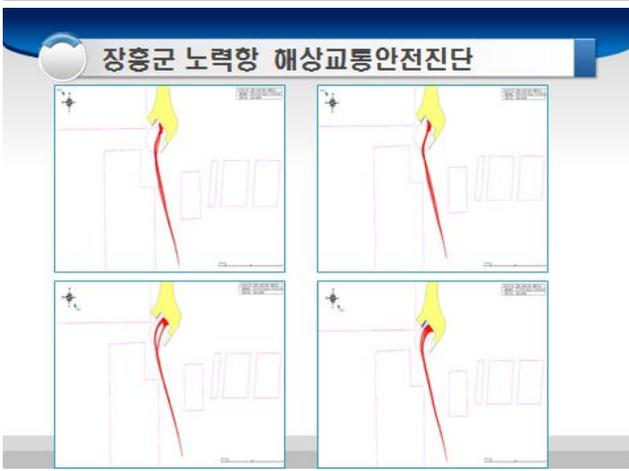
### 장흥군 노력항 해상교통안전진단

진단항목	진단항목별 포함 내용	기질상 진단항목	항목검토결과	진단시기 여부
해상교통 현상조사	사업개요			●
	설계기준			●
	자연환경	●	●	●
	항형여건			●
해상교통조사	해상교통조사			●
	해상사고발생현황			●
	현행 해상교통류			●
	해상교통혼잡도	●	●	●
해상교통 시스템 적정성 평가	통합안전성	●	●	●
	절이안전성	●	●	●
	계류안전성	●	●	●
	해상교통류	△	-	-
해상교통 안전대책	진단결과에 따른 안전대책			●
	공사중 안전대책	●	●	●
	완공후 안전대책			●

### 장흥군 노력항 해상교통안전진단

**해사안전법 시행령**  
별표 2의 2 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(제7조의2 관련)

구분	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
4. 항만 또는 부두	가. 「항만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부역항 또는 연안항을 새로 지정의 개발·재개발하려는 경우



- ### 장흥군 노력항 해상교통안전진단
- 대상선박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해상교통안전진단
  - 무역항 기본계획 고시 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안전진단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여 설계변경된 경우 다수 존재
  - 연안항 지정의 경우에는 도선사, 책임급 진단사, 지방청 선원 해사안전과와 협의 또는 자문 의무화

\* First Author : jjjong@mmu.ac.kr, 061-240-7175